

ESG위원회 운영규정

팬오션 주식회사

ESG위원회 운영규정

制定 2022.05.09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팬오션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설치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역할)

- ① 위원회는 회사의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관련 업무 계획을 결정 및 승인하고, 그 활동을 관리·감독·평가·검토한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 동안으로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6조 (종류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
-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 1회 개최한다
-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부의 및 보고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ESG 경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 2.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3.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
 4.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/보건에 관한 정책활동 검토 및 심의
 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기업지배구조현장 제·개정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
 2. ESG 관련 외부기관 평가 결과 검토 및 대응 방안 보고
 3. ESG 개선 활동(모니터링) 연 2 회 이상 보고
 4. 환경/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보고
 5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 11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2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3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4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경영기획담당 임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5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